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8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기정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9. 20. 접수 제560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2017. 9. 19.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 9.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자녀인 D의 자녀로서 원고의 손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우선 큰아들인 D 명의로 하여 두었다가 원고가 사망하거나 재건축시 이를 매매하여 형제들과 동등하게 나누는 조건으로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손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증여의사가 없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인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원인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원고는 잠정적으로 큰아들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있었을 뿐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원고의 다른 자녀들(D의 형제자매들)의 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행 당시 원고가 직접 참여한 사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위임장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매수자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자필서명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법무사 E 사무소에서 원고 본인확인을 하였고, 원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자필기재 및 서명을 하고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만

별지